

영어 법조동사에 대한 의미 분석

조경숙
(호남대학교)

Cho, Kyung-sook. 1997. The Semantic Analysis of English Modal Auxiliaries. *Linguistics*, 5-2, 77-9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semantic relationship among English modal auxiliaries. For this purpose, firstly, I analyzed the meanings of central modal auxiliaries in terms of the kinds and the degrees of modality. In the kinds of modality, there are four types such as [epistemic], [deontic], [capacity] and [generic]. Also, there are three degrees of modality: [necessity], [approximate necessity] and [possibility]. Through this analysis, I tried to show the semantic relationship among several central modal auxiliaries. Next, I analyzed the meanings of marginal modal auxiliaries that have some different morphological, syntactic properties to central modal auxiliaries, in terms of the kinds and the degrees of modality. Through this analysis, I tried to show semantic similarities and implicational differences between central modal auxiliaries and marginal modal auxiliaries. (Honam University)

1. 법성표현과 법조동사

화자가 어떤 상황에 관하여 발화할 때 의미 표현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화자가 그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만을 기술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화자가 상황에 대한 단순한 사실의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화자의 심적 태도란 문장이 서술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의견, 태도, 판단을 말한다. 이와같이 언어표현에 있어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 (opinion and attitude)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의미범주를 법성(modality)이라 한다(Lyons, 1977: 452).

언어가 법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휘적 방법과 문법적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어휘적 방법은 (1)과 같이 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부사 (modal adverb)나 이들로부터 파생된 명사나 형용사등의 어휘를 동원하는 방법이다.

- (1) *Perhaps* he went to Paris.

다음으로 범성을 표현하는 문법적 방법에는 아래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동사의 굴절형을 통하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문장 (2a)는 동사의 굴절형 *live*를 통하여 기원이라는 범성을 표현하고 있다. 동사의 굴절형을 통하여 범성을 표시하는 이러한 문법체계를 우리는 범(mood)이라 부른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동사 굴절어미의 쇠퇴로 인하여 동사의 외형적 대립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범에 의한 범성 표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Zandvoort & Ek, 1975: 86). 둘째 범성을 표현하는 문법적 방법에는 시제의 변화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문장 (2b)는 과거 시제를 통하여 명제의 비사실성(non-factuality)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로 범조동사(modal auxiliary)를 동원하여 범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2c)는 *must*를 통하여 명제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현한다.

- (2) a. Long *live* the King!
- b. I wish I *had* time to see her more often.
- c. You *must* be right.

위의 *must*와 같이 다른 동사를 도와 범성 표현의 의미 기능을 하는 동사 또는 동사군을 가리켜 범조동사라 부른다.

그런데 범조동사는 의미적으로 단일한 범주를 형성하는 한편 형태적, 통사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범주로 구분된다. 먼저 범조동사들은 형태적, 통사적으로 전형적인 조동사의 특징을 보이는 중심 범조동사(central modal auxiliaries)와, 조동사와 완전동사(full verb)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변 범조동사(marginal modal auxiliaries)의 두 범주로 나뉜다. 주변 범조동사들은 그것들이 완전동사와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이느냐, 조동사와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시 주변법동사(marginal verbs), 법숙어(modal idioms), 준조동사(semi-auxiliaries), 연쇄동사(catenatives) 등의 하위 범주로 나뉘어진다 (Quirk, 1985: 137-147). 중심 범조동사에는 *can/could*, *may/might*, *shall/should*, *will/will/would/d*, *must* 등이 속하고, 주변 범조동사에는 *dare*, *had better*, *have to...* 같은 범조동사들이 속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형태, 통사적으로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영어의 여러 범조동사들의 의미를 범성 종류(kind of modality)와 범성 정도(degree of modality)라는 의미 요소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각 범조동사들이 보여주는 의미적 연관성과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 중심 범조동사의 의미를 각 범조동사들이 표현하고 있는 범성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분석하여 이 중심 범조동사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적 연관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형태적, 통사적으로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나, 법성표현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중심 법조동사와 단일한 의미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주변 법조동사들의 의미를 법성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분석하여, 이들이 중심 법조동사와 관련하여 보여주는 의미적 유사성과 그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중심 법조동사의 의미 분석

법조동사의 의미는 법조동사가 나타내는 법성의 종류(kind)와 법성의 정도(degree)에 근거하여 분석될 수 있다. 법성의 종류란¹ 법성이 문장의 의미, 즉 명제에 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법성의 정도란 법성이 명제에 관여하는 힘의 세기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법성의 종류는 법성이 화자 지향성을 가지느냐, 주어 지향성을² 가지느냐에 따라 화자 지향적 법성(speaker-oriented modality)과 주어 지향적 법성(subject-oriented modality)으로 나눌 수 있다(Palmer, 1986: 102-104). 화자 지향적 법성은 다시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논리적 판단을 가리키는 인식적 법성(epistemic modality)과, 화자가 청자 또는 문장의 주어에게 어떤 행위를 부과하거나 또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적 법성(deontic modality)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주어 지향적 법성은 주어의 능력을 표현하는 역량적 법성(capacity modality)과, 주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총칭적 법성(generic modality)으로 나눌 수 있다(Hofmann, 1993: 129 - 155).

다음으로 법성의 정도에 관하여 살펴 보면, 법성의 정도(degree)는 [필연성(necessity)], [근사필연성(approximate necessity)], [가능성(possibility)], [불가능성(impossibility)]등의 단계로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법성이 명제에 관여하는 힘의 정도가 가장 강한 경우를 [필연성]이라 하고 가장 약한 경우를 [불가능성]이라 할 때, 어휘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는 힘의 세기는 다음의 도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Quirk(1985: 221)는 법성의 종류를, 어떤 사건에 대한 인간의 내부적인 통제력에 관한 내재적 법성(intrinsic modality)과,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인간의 판단인 외재적 법성(extrinsic modality)의 두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Palmer(1987: 97)는 법성의 종류를 인식적 법성, 의무적 법성, 역동적 법성(dynamic modality)의 세 가지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2. 화자 지향성이란 명제가 표현하는 법성이 화자와 관련하여 해석됨을 말하며 주어 지향성이란 문장의 주어와 관련하여 해석됨을 가리킨다.

(3)

법성의 힘	법성	대략의 의미
100%	필연성	[certain]
↑	근사 필연성	[quite probable]
0%	가능성	[possible]
	불가능성	[impossible]

그러면 이와 같은 법성의 종류와 법성 정도에 기반한 의미요소에 의하여 중심 법조동사의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2.1 인식적 법조동사

중심 법조동사 중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논리적 판단, 즉 인식적 법성을 나타내는 법조동사를 인식적 법조동사(epistemic modal auxiliary)라 한다. 인식적 법조동사에는 *must*, *will*, *should*, *may*, *might* 등이 해당된다.

인식적 법조동사 중에서, 화자가 명제의 내용에 대하여 갖는 믿음의 정도가 가장 강한 [필연성]의 단계를 나타내는 법조동사로는 *must*가 있다. 문장 (4)의 *must*는 '존이 사무실에 있음'이라는 명제의 사실성(factuality)에 대한 화자의 강한 추측이나,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추론에 근거하여 화자가 내린 논리적 필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4) John *must* be in his office.

또한 아래와 같이 예측(prediction)을 표현하는 *will*도 인식적 법조동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Palmer, 1987: 97). 명제의 내용에 대한 예측이란 화자가 갖는 판단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will*은 논리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must*와 유사한 단계의 법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Quirk, 1985: 228).

(5) a. She *will* have had her dinner by now.

- b. That'll be the postman. [on hearing the doorbell ring]

다음으로 명제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신 정도가 [필연성]보다 약간 낮은 [근사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인식적 법조동사에는 *should*가 있다. 인식적 법성에 있어서 [근사 필연성] 단계는 개연성(probability)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컨대 문장 (6)는 ‘존이 사무실에 있음’이라는 명제가 진일 개연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 (6) John *should* be in his office.

[필연성]을 나타내는 인식적 법조동사 *must*와 [근사 필연성]을 나타내는 인식적 법조동사 *should*간의 의미 차이는 다음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컨대 문장 (7a)와 같이 [필연성]의 법조동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앞에 기술된 명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뒤따라 나오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에 비해 문장 (7b)와 같이 [근사 필연성]의 법조동사는 이를 용인한다. 이는 법성이 명제에 관여하는 힘의 세기, 즉 법성 정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 (7) a. * Sarah *must* be on holiday now, but she isn't.
 b. Sarah *should* be on holiday now, but she isn't.

셋째로 명제의 내용에 대하여 법성이 가하는 힘의 정도가 [근사 필연성]보다 더 낮은 단계로서 [가능성] 단계가 있다. [가능성]이 인식적 법성 해석과 연관되면, 이는 명제의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화자의 판단, 즉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 불확실한 추측은 법조동사 *may*나 *might*로 표현되는데 *might*는 *may*보다는 [가능성]의 단계가 약간 낮은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아래의 문장들은 [가능성]이 인식적 법성 해석을 받는 경우로서 ‘당신이 옳음’이 가능하다고 보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 (8) a. You *may* be right.
 b. You *might* be right.

인식적 법조동사는 위와 같이 어떤 상태(state)에 대한 판단을 표현할 뿐 아니라, (9)와 같이 어떤 사건(event)에 대한 판단을 표현할 수도 있다. 사건에 대한 인식적 법성표현은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문장 (9)는 ‘존이 노래를 부르다’라는 동작 또는 사건에 대

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 (9) a. John *must* be singing now.
- b. John *should* be singing now.
- c. John *may* be singing now.

2.2 의무적 법조동사

의무적 법조동사는 화자 또는 다른 어떤 요소(예를 들면 사회, 윤리, 관습)가 청자 또는 문장의 주어에게 어떤 행위를 부과하거나, 또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려고 할 때 사용되는 법조동사이다. 의무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법조동사는 인식적 법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ust*이다. *Must*는 화자 또는 사회가 청자나 문장의 주어에게 명제의 내용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아래 문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일찍 도착함'을 강제(compulsion)하는 표현으로서, 즉 문장의 주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 의무(obligation)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must*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명제의 내용이 실행될 것을 요구하는 화자의 권위(authority)를 나타낸다.

- (10) You *must* be back by ten o'clock.

예외 없이 행해져야하는 [필연성] 단계의 의무를 표현하는 *must*에 비해 *should*는 강제의 정도가 조금 약한 [근사 필연성] 단계의 의무적 법조동사이다. 따라서 실제의 언어 생활에서 개인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의무를 표현하는 경우, 극단적 표현인 *must*보다 *should*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1) You *should* be back by ten o'clock.

또한 인식적 법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법성을 나타내는 *must*와 *should* 간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문장 (12a)와 같은 [필연성]의 단계는 앞에 기술된 명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뒤따라 나올 경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에 비해 문장(12b)와 같은 [근사 필연성]의 단계는 보다 덜 절대적인 의무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한다.

- (12) a. * He *must* come, but he won't.

- b. He *should* come, but he *won't*.

다음으로 [가능성]이 의무적 법성과 연관되면 화자가 청자에게 명제의 내용을 허락(permission)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식적 법성의 [가능성] 단계를 나타내는 법조동사가 *may*와 *might*인데 비해, 의무적 법성의 [가능성] 단계를 나타내는 법조동사는 *may*와 *can*이다. 아래 문장의 *may*와 *can*은 ‘당신이 곧 떠남’이 가능하도록 하는 화자의 허락을 표현한다.

- (13) You *may/can* leave immediately.

이중 *may*는 *can*에 비해 어떤 행위를 허가해 줄 수 있는 화자의 권위(authority)를 나타낸다. 따라서 *may*는 격식체에 주로 쓰이는 제한적인 분포를 보이고 일상체에서는 보통 *can*이 사용된다.

의무적 법성을 표현하는 법조동사에는 *shall*도 해당된다. *Shall*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수행될 것에 대한 화자의 보증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문장 (14)와 같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약속이나 위협으로 기술 될 때도 있다.

- (14) a. You *shall* have your reward tomorrow.
 b. He *shall* be told.

그러나 *shall*은 청자가 아닌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임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에게 의무나 허락을 부과하여 청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의무적 법조동사 *must*나 *may*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all*은, 명제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영향력을 표현하며 수행(performative)의 의미를 동반하는 의무적 법성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무적 법조동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의 법조동사가 인식적 법성과 의무적 법성의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아래의 문장들은 인식적 법성해석과 의무적 법성해석, 두 가지가 가능한 중의적인 문장이다 (Steele, et al., 1981).

- (15) a. He *must* be in his office.
 b. The book *should* be on the shelf.
 c. He *may* come tomorrow.

먼저 문장 (15a)에 인식적 법성해석을 가하면 (16a)의 의미로, 의무적 법성

84 조경숙

해석을 가하면 (16b)로 각각 해석된다.

- (16) a. I am certain that he is in his office: 필연성
b. He is obliged to be in his office: 강제

또한 문장 (15b)에 인식적 법성해석을 가하면 (17a)의 의미로, 의무적 법성해석을 가하면 (17b)의 의미로 각각 해석된다.

- (17) a. It probably is that the book is on the shelf: 개연성
b. Its proper place is on the shelf: 의무

마지막으로 문장 (15c)도 인식적 법성해석을 가하면 (18a)의 의미로, 의무적 법성해석을 가하면 (18b)의 의미로 각각 해석된다.

- (18) a. Perhaps he will come tomorrow : 가능성
b. He is permitted to come tomorrow: 허락

따라서 단일한 법조동사들이 갖는 다양한 의미해석은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법성 종류의 다양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2.3 역량적 법조동사와 총칭적 법조동사

앞에서 본 인식적 법조동사와 의무적 법조동사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화자 지향적 법조동사이었다. 한편 명제가 표현하는 법성이 주어와 연관되어 해석되는 주어 지향적 법조동사에는 역량적 법조동사와 총칭적 법조동사가 있다. 역량적 법조동사는 주어의 물리적 또는 심적인 능력을 나타낸다.

역량적 법성의 [가능성] 단계에 사용되는 법조동사에는 *can*이 있다. 예컨대 아래 문장의 *can*은 주어가 '이태리어를 배운다'라는 사건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³

- (19) John *can* speak Italian.

3. 그러나 능력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단일한 어휘의 역량적 법조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총칭적 법조동사는 주어의 일반적인 특성 또는 현재나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 총칭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법조동사에는 *will*과 *would*가 있다.

- (20) a. She'll sit on the floor quietly all day.
 b. Every morning he *would* go for a long walk.

문장 (20a)는 주어의 현재의 습관을, (20b)는 과거의 특징적인 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됨, 즉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 습관이란 주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주어의 의지가 더하여진 경우이다. 그러나 (21)과 같이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는,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습관이 아니라 주어의 일반적인 특성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주어의 일반적인 특성은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침을 함축하고 있다(Hofmann, 1993: 140).

- (21) a. When I lived in Canada, it *would* often snow 1 meter in a day.
 b. Late in April, the cherry blossoms *would* all open beautifully.

또한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현상의 추론을 표현할 때 쓰이는 *will*도 총칭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⁴

- (22) Oil *will* float on water.

나아가 *can*도 총칭적 법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23a)의 *can*은 묘사되는 행위가 산발적인 까닭에 예측 할 수는 없어도, 독특한 주어의 어떤 특성을 표현한다. 이때의 *can*은 총칭적 법성의 [가능성]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Hofmann, 1993: 140). 그리고 총칭적 법성을 표현하는 *can*의 부정어는 *can't*가 아니고 (23b)와 같이 *won't*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 (23) a. She *can* talk your ears off, if you don't watch out.
 b. She *won't*/ *don't* talk your ears off, if you don't watch out.

이상에서 본 중심 법조동사들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4. Quirk(1985: 228)는 이러한 문장을 외재적 법성에 속하는 예측의 경우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Palmer(1987: 138)는 법성의 주어지향성 때문에 역동적 법성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24)

종류 정도	인식적	의무적	역량적	총칭적
[필연성]	<i>must</i> <i>will</i>	<i>must</i> <i>shall</i>		<i>will</i> <i>would</i>
[근사 필연성]	<i>should</i>	<i>should</i>		
[가능성]	<i>may</i> <i>might</i>	<i>may</i> <i>can</i>	<i>can</i>	<i>can</i> <i>could</i>

3. 주변 법조동사의 의미 분석

3.1 주변 법조동사의 형태적, 통사적 특징

영어에는 중심 법조동사와 마찬가지로 법성을 표현하는 의미 기능을 하지만 법조동사는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이는 동사군이 있다. 이러한 동사들을 가리켜 주변 법조동사(marginal modal auxiliary)라고 한다.

주변 법조동사들은 전형적인 조동사의 특징을 보이는 중심 법조동사와는 달리 형태적, 또는 통사적인 면에서 완전동사와 조동사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인다. 여기에서 완전동사적인 특성이란, 어형 변화의 여러 형태 즉 원형, 현재형, 3인칭 단수형, 과거형, 현재분사, 과거분사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형태적인 특징과,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do*작용어(do-operator)를 취하는 통사적 특징을 가리킨다.

완전동사와 조동사의 중간적인 단계에 위치하는 주변 법조동사들은 그것들이 완전동사와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이느냐, 조동사와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시 주변법동사(marginal verbs), 법숙어(modal idioms), 준조동사(semi-auxiliaries), 연쇄동사(catenatives)등의 하위 범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주변 법조동사의 여러 하위 범주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적, 통사적 특성을 다음에서 각각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주변법동사란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 그 자체로서 작용어가 되기도 하고, *do*작용어를 취하기도 하는 주변 법조동사의 한 범주를 가리킨다. 예컨대 주변법동사 *dare*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문문과 부정문은 문장(25)에서처럼 *dare*를 작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문장(26)에서처럼 *do*작용

어를 동원하기도 한다.

- (25) a. He *daren't* escape.
- b. *Dare* we escape?
- (26) a. They do not *dare* ask for more.
- b. Do they *dare* ask for more?

*dare*가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작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은 조동사의 통사적 기능과 유사하다. 한편 *do*작용어를 취하여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는 완전동사의 통사적 기능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의 (26)처럼 *do*를 써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에도 *dare* 다음에는 *to*없는 동사의 원형이 오기 때문에 완전동사라고 볼 수는 없다.⁵ 이와 같이 작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조동사와 완전동사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법동사의 범주에는 *dare*, *need*, *ought to*, *used to*등이 속한다.

다음으로 법숙어는 두 개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법성을 표현하는 주변법조동사의 범주를 가리킨다. 법숙어의 통사, 어형적 특성은 중심 법조동사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 예컨대 법숙어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형성할 때, 낱말군의 첫번째 낱말을 작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조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보여준다. 즉 아래에서 *had better*을 포함하는 문장은 *had*가 작용어로 사용되며, *would rather*의 경우는 *would*가, *have got to*의 경우는 *have*가, *be to*의 경우는 *be*동사가 각각 작용어로서 기능한다.

- (27) a. *Hadn't* we *better* lock the door?
- b. *Would* you *rather* eat in a hotel?
- c. We *haven't* got *to* pay already, have we?
- d. I *wasn't* *to* know that you were waiting.

또한 법숙어는 비정형 형태(non-finite form)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 조동사의 형태적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법숙어는 아래의 예처럼 다른 동사의 다음에 쓰일 수 없다.

5. 물론 아래와 같이 *to*부정사를 취하는 *dare*는 완전동사로 분류된다. 이는 *need to*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a. He *doesn't* *dare* to escape.
- b. Do we *dare* to escape?

88 조경속

- (28) a. * I will *have got to* leave soon.
b. * The conference has *been to* take place in Athens.

법숙어는 다만 법성이 하나의 어휘로 표현되지 못하며 또한 이들이 나타내는 법성의 의미가 구성 표현들의 의미로부터 합성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숙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영어의 법숙어에는 *had better*, *would rather*, *have got to*, *be to*등의 네 개가 있다.

셋째로 준조동사는 *be*동사나 *have*동사로 시작되는 동사군으로서 법성 표현의 기능을 하는 주변 법조동사를 가리킨다. 준조동사의 경우도 (29)에서 보듯이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형성할 때 동사군의 첫번째 낱말이 작용어로 사용되는 조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

- (29) a. Ada *isn't going to* win.
b. *Is Ada going to* win?

그러나 준조동사는 비정형 형태를 가질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준조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완전동사의 형태적, 통사적 특성을 가진다. 예컨대 아래 (30a)의 *been willing to*는 분사형이며, (30b)의 *be able to*와 (30c)의 *have to*는 원형의 형태이다.

- (30) a. We have always *been willing to* help.
b. No one is likely to *be able to* recognize her.
c. Someone is going to *have to* complain.

이러한 준조동사의 어형적 특성은 중심 법조동사가 사용될 수 없는 통사적 환경, 즉 (31a)와 같이 다른 조동사 다음이나 (31b)와 같이 부정사 구문에서, 중심 법조동사의 법성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문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 (31) a. We haven't **could/ been able to* solve problem.
b. To **can/ be allowed to* speak freely is a human right.

준조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어휘가 해당된다.

- (32) *be able to* *be bound to* *be likely to* *be supposed to*
be about to *be due to* *be meant to* *be willing to*
be apt to *be going to* *be obliged to* *have to*

마지막으로 연쇄동사는 주변 법조동사 중에서 가장 완전동사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범주이다. 이들은 문장 (33)에서 보듯이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에 *do*작용어를 취한다는 점에서 완전동사의 특성을 보인다.

- (33) Sam didn't *appear*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problem.

그러나 연쇄동사는 '주어의 독립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는 조동사에 속하게 된다. 주어의 독립요건이란 조동사를 본동사와 구별하는 요건 중의 하나로서, 조동사는 문장의 주어로부터 의미적 제약을 받지 않음을 가리킨다. 예컨대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은 수동문을 갖는다. 이때 *appeared to*는 태(voice)의 변화로 인하여 문장의 주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여한 의미의 변화도 받지 않는다.

- (34) The importance of the problem *appeared* to be realized by Sam.

이러한 연쇄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어휘가 해당한다.

- (35) *appear to*, *come to*, *fail to*,
 get to, *happen to*, *manage to*,
 seem to, *tend to*, *turn out to*

이상 주변 법조동사의 하위 범주들이 보여 주는 형태적, 통사적 특성을, 조동사의 특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중심 법조동사를 맨 위에 놓고 완전동사를 맨 아래에 설정하여 도표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도표에서 o표는 법조동사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x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o와 x가 동시에 있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모두 있음을 각각 나타낸다.

- (36)

3.2 주변 법조동사의 의미 분석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어형적,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변 법조동사들의 의미는 중심 법조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표현

	두 개 이상 낱말	자신이 작용어	비정형 형태	주어독립
중심법 조동사	X	O	X	O
주변법동사	X, O	X, O	X	O
법숙어	O	O	X	O
준조동사	O	O	O	O
연쇄동사	O	X	O	O
본동사+ 비정형절	O	X	O	X

하는 법성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 즉 인식적 법성, 의무적 법성, 역량적 법성, 총칭적 법성등의 종류와 [필연성], [근사 가능성], [가능성]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요소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성 유형에 따른 의미 분석은 주변 법조동사와 중심 법조동사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3.2.1 주변 법조동사의 인식적 법성 표현

주변 법조동사의 여러 하위 범주 중 인식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주변 법조동사에는 통사적, 어형적으로 법숙어에 속하는 *have got to*, 준조동사인 *have to*, *be bound to*등이 있다. 이들은 인식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중심 법조동사 *must*와 의미적으로 상응한다.

- (37) a. You've got to be joking. (= You must be joking.)
- b. You've got to be mad to risk your life like that. (= You must be mad to risk your life like that.)

준조동사 *have to*도 드물기는 하지만 아래 문장처럼 인식적 법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때 *have to*는 *had to*라는 과거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과거시에 있어서 *must*를 대신하여 인식적 판단을 표현할 수 있다(Palmer, 1987: 124-125).

- (38) The book had to be there - I'd looked everywhere else.

또한 준조동사 *be bound to*도 (39)에서와 보듯이 인식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표현한다.

- (39) a. John's *bound* to be there. (현재)
 b. John's *bound* to be working. (현재, 내일)
 c. John's *bound* to go to London. (날마다)

특히 *be bound to*는 미래시의 인식적 법성 표현에서, 잠재적인 중의성 때 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must*를 대신한다.

- (40) a. John *is bound* to be there tomorrow.
 b. John *is bound* to come tomorrow.

그러나 *be bound to*는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결론을 함축하지 않으므로 *almost*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must*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차 이를 보인다.

- (41) a. John's almost *bound* to be in his office.
 b. * John almost *must* be in his office.

다음으로 인식적 법성의 [근사 필연성] 단계를 표시할 수 있는 주변 법 조동사로는 준조동사 *be supposed to*가 있다. *be supposed to*는 아래와 같이 인식적 법성을 표현하는 *should*를 대신할 수 있다(Quirk, 1985: 237).

- (42) Their team *is supposed* to be the best. (= Their team *should* be the best.)

3.2.2 주변 법조동사의 의무적 법성 표현

주변 법조동사가 의무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법숙어 *have got to*, *need*, 준조동사 *have to*, *be bound to* 등이 있다. 의무적 법성 표현의 경우, 법숙어 *have got to*와 준조동사 *have to*는 *have got to*가 보다 일상체의 느낌을 준다는 점을 제외하면,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have (got) to*는 아래에서 보듯이 중심 법조동사인 *must*와 마찬가지로 청자나 문장의 주어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표현한다.

- (43) a. He's (*got*) to go to hospital.
 b. I've (*got*) to be at airport at four.

그러나 *must*는 화자의 권위를 함축하고 있는 의무인 반면에 *have (got) to*는 화자의 권위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의무를 표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와 같이 1인칭 주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서 더욱 분명해진다(Quirk, 1985: 225-226).

- (44) a. I am afraid I *must* go now.
 b. I am afraid I *have (got) to* go now.

문장 (44a)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강제, 즉 자신이 느끼는 의무감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44b)는 화자에 의해 부과되는 강제성이 아니라 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강제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변법동사 *need*도 의무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주변 법조동사이다. 그런데 주변법동사 *need*는 긍정 서술문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need*의 부정형 *needn't*는 의무적 법성을 나타내는 *must*의 내부부정(internal negation)을 표현한다. 예컨대 문장 (45)는 ‘가야할 의무가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 (45) You *needn't* go now.

그런데 의문문에 쓰인 *need*는 *must*와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must*를 포함하는 문장 (46a)는 화자에 의해 부과되어진 의무를 표현하고 있는데 비하여 *need*의 문장 (46b)는 화자에 의해 부과되어진 의무가 아닌, 단순한 주어가 가지는 필요성과 요구를 표현한다.⁶

- (46) a. *Must* I go?
 b. *Need* I go?

또한 준조동사 *be bound to*도 의무적 법성을 표현하는 *must*와 의미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아래 문장에서 화자는 문장의 주어가 어떤 행

6. 따라서 Palmer(1987: 128)는 *need*가 *must*와 같은 엄밀한 의미의 의무적 법조동사는 아님을 덧붙이고 있다. 한편 Hofmann(1993: 134)은 *need to*를 역량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로 본다. 왜냐하면 *need to*는 주어의 필요 및 요구, 즉 주어 지향적인 법성을 나타내므로 화자 지향적인 의무적 법조동사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을 취해야 함을 의무로 간주하여 그것을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의 *be bound to*는 의무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47) You *are bound to* pay your debts. (= You *must* pay your debts.)

의무적 법성의 [근사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주변 법조동사로는 주변 법동사 *ought to*, 범숙어 *had better*, 준조동사 *be supposed to*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중심 법조동사 *should*와 의미적으로 상응한다. 그러나 *shoud*는 인식적 법성 및 의무적 법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ought to*가 인식적 법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Palmer, 1987: 132). 따라서 *ought to*는 (48a)와 같이 의무적 법성을 표현하는 *should*만을 대체 할 수 있다. 또한 준조동사 *be supposed to*도 의무적 법성의 [근사 필연성]의 단계를 표현한다.

- (48) a. You *ought to* be here at nine. (= You *should* be here at nine.)
 b. You *were supposed to* be here at nine. (= You *should* be here at nine.)

한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고 싶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주변 법조동사로서 *had better*도 있다. *had better*은 아래에서 보듯이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화자가 청자에게 경고하는 의미를 함축 한다. 따라서 *had better*도 의무적 법성의 [근사 필연성]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49) You'd better go.

다음으로 의무적 법성의 [가능성] 단계를 나타내는 주변 법조동사로는 준조동사 *be allowed to*, *be permitted to*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아래의 문장에서 *be allowed to*는 허락을 나타내는 *can*을 대신한다.

- (50) Are we *allowed to* borrow these books from the library? (= Can we borrow these books from the library?)

또한 *be permitted to*는 *may*의 의미와 상응한다.

- (51) You *are permitted to* leave when you like. (= You *may* leave

when you like.)

3.2.3 주변 법조동사의 역량적 법성 표현과 총칭적 법성 표현

주어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량적 법성 표현의 주변 법조동사에는 준조동사 *be able to*가 있다. *be able to*는 중심 법조동사 *can*과 같이 역량적 법성의 [가능성] 단계를 나타낸다.

- (52) You *are able to* look at the future in this very objective way.
(= You *can* look at the future in this very objective way.

*Be able to*는 대부분 *can*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과거의 행위를 표현할 때에는 두 표현들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was able to X*는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X라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비해, *could X*는 단순히 그 일이 가능했다고 말하여 X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행위의 성취를 함축하는 문맥에서는 *could*가 사용될 수 없다.

- (53) a. I ran fast, and *was able to* catch the bus.
b. *I ran fast, and *could* catch the bus.

다음으로 주변법동사 *dare*도 역량적 법조동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⁷ 예컨대 아래 문장 (54)의 *dare*는 주어가 너무 겁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는 주어가 지닌 심적인 능력을 나타내므로 역량적 법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dare*는 *need*와 마찬가지로 긍정 서술문에서는 쓰일 수 없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만 쓰이는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54) a. I *daren't* ask him to come.
b. *Dare* I ask him?
c. *I *dare* ask him to come.

한편 총칭적 법성을 표현하는 주변법동사로는 *used to*가 있다. *used to*

7. *Dare*를 역량적 법조동사에 포함시킨 것은 Hofmann(1993: 136)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는 과거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낸다. 예컨대 아래의 (55a)는 과거에 어떤 행위가 반복되어 행하여졌음, 즉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고 (55b)는 과거의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 (55) a. They *used to* study together.
 b. The garage *used to* be over there.

그런데 (55a)와 같이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는 경우는 (56a)와 같이 총칭적법성을 나타내는 중심 법조동사인 *would*로 대치될 수 있으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55b)의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 (56) a. They *would* study together.
 b. * The garage *would* be over there.

즉 *used to*는 총칭적 법성의 [필연성] 단계를 나타내는 중심 법조동사 *would*와 부분적으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형태적, 통사적으로 조동사와 본동사의 중간적 특징을 보이는 여러 주변 법조동사들의 의미를 법성의 종류와 법성 정도에 기반하여 살펴 보았다. 이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57)

종류 정도	인식적	의무적	역량적	총칭적
[필연성]	<i>have got to,</i> <i>have to,</i> <i>be bound to</i>	<i>have got to,</i> <i>have to,</i> <i>be bound to,</i> <i>need</i>		<i>used to</i>
[근사 필연성]	<i>be supposed to</i> <i>should</i>	<i>be supposed to,</i> <i>ought to,</i> <i>had better</i>		
[가능성]		<i>be permitted to,</i> <i>be allowed to</i>	<i>be able to,</i> <i>dare</i>	

4.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영어의 여러 법조동사들의 의미를,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법성의 종류와 정도에 기반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법성의 종류는 [인식적 법성], [의무적 법성], [역량적 법성], [총칭적 법성]등의 의미요소로, 법성의 정도는 [필연성], [근사 필연성], [가능성]등의 의미요소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의미분석은 중심 법조동사에 속하는 여러 법조동사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보여줄 뿐아니라 중심 법조동사와 주변 법조동사가 보여 주는 의미적 유사성과 그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

나아가 중심 법조동사를 사용할 수 없는 통사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중심 법조동사와 주변 법조동사 사이의 대치(permuation) 가능성은 그들이 표현하는 법성의 종류와 법성의 정도에 의존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58a)의 능력을 나타내는 *can*은 역량적 법성의 [가능성] 단계를 표현하는 중심 법조동사이므로 역시 같은 법성 종류와 법성 정도에 해당하는 주변 법조동사 *be able to*로 대치된다. 또한 (58b)에서 허락을 표현하는 *can*은 의무적 법성의 [가능성] 단계를 표현하는 중심 법조동사이므로 여기에 상응하는 주변 법조동사 *be allowed to*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 (58) a. We haven't * could/been able to solve problem.
 b. To *can/be allowed to speak freely is a human right.

그러나 이상의 의미 분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주어의 의지(volition)를 나타내는 *will*의 경우, 이를 어떠한 법성 종류와 법성 정도로 분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⁸ 예컨대 문장 (59a)는 자발적인 의사(willingness)를 표현하고, 문장 (59b)는 의도(intention)를, 그리고 문장(59c)은 고집(insistence)를 나타내고 있다(Quirk, 1985: 229).

- (59) a. Will/ Would you help me to address these letters?
 I'll do it, if you like.
 b. I'll write as soon as I can.
 c. If you will go out without your overcoat, what can you expect?

8. Palmer(1986: 102-103)는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는 법성을, 주어의 능력을 표현하는 법성과 함께 역동적 법성이라 보았다. 즉 역동적 법성은 문장 주어에 관한 어떤 점을 서술해 주는 주어 지향적인 법성이라 하였다.

이때 *will*이 표현하고 있는 법성인 ‘주어의 의지’란 주어 지향적인 법성이다. 그런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주어 지향적인 법성, 즉 역량적 법성이나 총칭적 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장 (59a)가 나타내는 자발적인 의사(willingness)란 의지의 가장 약한 단계이며, 문장 (59b)가 나타내는 의도(intention)는 의지의 중간 단계를, 그리고 문장 (59c)의 고집(insistence)은 가장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의지의 단계를 [가능성], [유사 필연성], [필연성]의 법성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여러 주변 법조동사들과 중심 법조동사들이 보여주는 함축적 의미의 차이도 더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컨대 역량적 법성을 나타내는 중심 법조동사 *can*과 주변 법조동사 *be able to*는, 과거의 행위를 나타낼 때에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이 보이는 함축적 의미의 차이는 [행위의 성취(actuality)]라는 의미요소에 기인한다.

- (60) a. I *could* catch the bus. (버스를 잡지 못함을 함축)
 b. I *was able to* catch the bus. (버스를 잡는데 성공함을 함축)

이에 비해 의무적 법성을 나타내는 중심 법조동사 *must*와 주변 법조동사 *have got to*는 [화자의 권위]라는 의미요소에서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관계이다. 예컨대 아래의 (61a)는 명제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화자의 권위를 표현하는데 비해 (61b)는 청자의 단순한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 (61) a. He *must* go to hospital.
 b. He *has got to* go to hospital.

따라서 중심 법조동사와 주변 법조동사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의미요소의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Coates, J. 1983.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Croom Helm.
 Hofmann, Th. R. 1976. "Past Tense Replacement and the Modal System", in J. D. McCawley, *Syntax and Semantics* 7. New York: Academic Press.
 Hofmann, Th. R. 1993. *Realms of Meaning*. New York: Longman.

- Lyons, J. 1977.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 Press.
- Palmer, F. R. 1979.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London: Longman.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 Press.
- Palmer, F. R. 1987.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72. *A Contemporary Grammar of the English*. London: Longman.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teele, S. et al. 1981. *An Encyclopedia of AUX: a Study in Cross-Linguistic Equivalence*. Cambridge: MIT Press.
- Zandvoort, R. & Ek, Van. 1975.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

506-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1
호남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영어영문학 전공